

제조물책임법(PL)의 시행과 기업에서의 대응방안 (II)

서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 병 록

3. 우리 나라 제조물책임법 해설

본 제조물책임법의 해설은 국민회의 추미애의원을 비롯한 91명의 국회의원이 1999년 11월 5일에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으로 확정된 법률에 대한 것이다. 정부에 이송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유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다.(법 제2조제1호)

둘째,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는 제조물을 업으로써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가 되고,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법 제2조제3호 및 법 제3조제2항)

셋째,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으로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법 제3조제1항)

넷째,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서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일정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조)

다섯째,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같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법 제5조)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법 제6조)

여섯째, 책임기간의 제한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

가. 목적(제1조)

第1條(目的) 이 法은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한 製造業者 등의 損害賠償責任을 規定함으로써 被害者의 보호를 도모하고 國民生活의 安全向上과 國民經濟의 健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본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들고 있다.

(1) 피해자의 보호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주체는 소비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주로 당해 제조물을 자기를 위해 사용·소비하는 자를 염두에 둔 것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자 외에도 예컨대 결함차의 사고에 연루된 승객이나 보행자 등과 같이 제조물을 직접 사용·소비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당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본법에 있어서 피해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을 포함한 취지이다. 이를 위해 본법에서는 목적을 소비자이익의 옹호 또는 증진에 한정하지 않고 넓게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본법의 직접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생활의 안전향상」은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달성될 것이 기대되고 있는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조물책임의 도입으로 초래되는 재판에 있어서 쟁점의 명확화, 판례수준의 평준화라고 하는 재판에 주는 영향은 물론 기업, 소비자쌍방의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재판 외에 있어서 피해구제의 원활화, 더 나아가 국제적인 조화에 맞춘 제도의 확립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EC지침에 의해 제조물책임을 도입한 유럽각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 제조물(제2조 제1호)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製造物”이라 함은 다른 動産이나 不動産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製造 또는 加工된 動産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은 과학기술이 급속히 진보하는 가운데서 대량생산·대량소비로 특징되는 공업적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안전이 제품의 제조업자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져 왔다는 배경아래, 제품관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원칙을 「과실」에서 「결함」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연혁을 살펴보면 제조물에 관한 민사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이나 처리가 이루어지고 유통된 동산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러한 면에서 본법의 대상으로 되는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라 함은 제조물의 설계, 가공, 검사, 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원재료에 손을 더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이며 이른바 제2차 산업에 관계가 있는 생산행위를 가리키며 1차 생산품의 산출, 서비스의 제공에는 사용되지 않는다」¹⁾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공」이라 함은 동산을 재료로 하여 이것에 공작을 더하여 그 본질은 유지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첫째,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자연력이 해당한다. 유체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간의 일부를 점하는 유형적 존재(분자가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다.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전기, 음향, 광선, 열, 물의 운동은 무체물이지만 관리가 가능하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물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동산이어야 한다. 이 법률에서는 부동산은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민법 제99조). 또한 제조물인가 여부는 유통된 시점에서 책임주체마다 판단한다. 사고 시에 부동산의 일부로 되었던 동산이더라도 인도된 시점에서 동산이고 당해 결함과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동산의 제조업자 등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셋째,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어야 한다. 제1차 산업이나 제3차 산업에 있어서 생산행위에는 「제조 또는 가공」 특히 「가공」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간단하게는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가공」인가 「미가공」인가의 판단은 구체적으로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당해 제조물에 덧붙여진 행위를 평가하는 등으로 결정된다.

1) 외국의 입법례

(가) EC지침

EC지침에서는 「전기 및 공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동산」이 적용대상이 되고, 그 동산이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에 부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

1) 內閣法制局法令用語 研究會 編, 法律用語辭典,(有斐閣)

다.(지침 제2조 및 서문) 따라서 제1차 농산물(축산물, 수산물 포함) 및 수렵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1차 농산물이라 함은 제1차 가공을 한 제품을 제외한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의미한다. EC지침에서는 제조물이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에 부합되거나 그 구성부분으로 된 이후에도 독립의 소유권의 객체로서의 동산성이 없더라도 製造物責任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조물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일본

일본법에서는 製造物에 관한 民事責任으로서의 製造物責任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이나 처리가 이루어지고 인도된 動産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면에서 「製造 또는 加工된 動産」으로 定義하고 있다. 「製造」라 함은 製品의 設計, 加工, 檢査, 表示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原材料에 손을 더하여 새로운 物品을 만드는 것. 生産보다는 좁은 개념이며 이른바 제2차 산업에 관계있는 생산행위를 가리키며 1차 생산품의 산출, 서비스의 제공에는 사용되지 않는다」²⁾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加工」이라 함은 動産을 재료로 하여 이것에 공작을 더하여 그 본질은 유지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일본 製造物責任法에서는 부동산이 제외되어 있지만 事故時에 不動産의 일부로 되었던 動産이더라도 인도된 시점에서 動産이고 當該缺陷과 발생한 損害와의 사이에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경우에는 當該 動産의 製造業者등은 製造物責任을 負擔하게 된다.

(다) 미국

미국에서는 리스테이트먼트 402A(使用者나 消費者의 身體的 損害에 대한 製品 賣渡人의 特別責任)에서 “使用者나 消費者 및 이들 재산에 불합리하게 危險한 缺陷狀態에 있는 모든 製品(and product in a defect condition unreasonably dangerous)을 販賣한 者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最終 使用者나 消費者 및 그 財産에 發生한 有形的 損害에 대하여 損害賠償責任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산 제품을 엄두에 두고 있다.

2) 제조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문제

(가) 自然産物

自然의 힘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自然産物에 대해서는 고도로 加工된 工業製品과는 생산형태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그 생산자가 缺陷의 創出에 직접기여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當該動産에 대해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처리가 더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製造物責任法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다. EC지침에서도 원칙적으로 1차 농산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이른바 傭선사항), 다만 가맹국에서 국내법으로 제조물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스랜드, 스웨덴에서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연산물이 포함된다.(리스트에이트먼트 402A조 코멘트)³⁾

(나) 부동산

EC지침에서는 부동산은 제조물에 포함되지 않

2) 內閣法制局 法令用語研究會 編, 法律用語辭典, 有斐閣

3) 松本恒雄, “製造物責任の現狀と課題 4. 製造物”, 「NBL」 No.457 37面(1990) 參照

는다. 그러나 EC지침에서는 제조물이 다른 동산이 나 부동산에 부합되거나 그 구성부분으로 된 이후에도 독립의 소유권의 객체로서의 동산성이 없더라도 製造物責任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조물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에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부동산 제조자의 책임이 아닌 동산의 제조자에게 책임을 문제삼게 된다.

미국에서도 리스테이트먼트 402A조가 동산공급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한 조문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량으로 건축판매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엄격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⁴⁾

(다) 전기 등 에너지

전기도 製造物責任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전기는 서비스인가 제품인가의 문제로 논의되었다. 미국에서는 가정에 공급하는 고압전력이 공급되어 화재를 일으킨 사건에서 전기를 제조물로 취급한 판례가 있으나 대다수의 주에서는 전기공급을 서비스로 보아 製造物責任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⁵⁾

EC지침에서는 제조물에 전기를 특별히 포함하고 있다.(지침 2조) 이는 종래부터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를 동산으로 취급하는 회원국(이탈리아 민법 814조)과 그렇지 않은 회원국이 존재하기 때문

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전기의 결함에 대해서 EC지침에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EC이사회는 해설에서는 「제조물의 정의 중에 전기가 포함되고 있지만 전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을 커버하는 취지이며,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송전선망을 타게된 후에 외부요인에 의해 결함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커버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영국의 소비자보호법(영국은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보호법에 포함되어 있다)에서는 「발전된 시점 즉 송전 또는 배전되기 전의 시점」(영국 소비자보호법 제4조 제2항)에서 결함의 유무를 판단하는 뜻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⁶⁾ 또한 정전은 전기의 불공급이며, 결함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전기의 결함으로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전압이나 싸이클 수의 이상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민법⁷⁾에서는 전기를 동산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제조물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본 민법⁸⁾에서는 동산을 유체물에 한정하기 때문에 전기는 제조물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병원 등에서 진단치료를 위하여 방사선, 자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를 제조물에 포함할 경우에는 이러한 에너지도 제조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에너지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발사장치 자체의 결함으로 처리된다.⁹⁾

4) Schipper v. Levitt & Sons, Inc., 207 A.2d 314(N.J. 1965) ; 松本恒雄, 「アメリカにおける製造物責任」, 「判例タイムズ」 六七三号 89面(1988) 參照.

5) 松本恒雄, 앞의 論文(アメリカにおける製造物責任), 90面 參照.

6) 通商産業省 産業政策局 消費經濟課 編集, 製造物責任法の解説, 財團法人 通商産業調査會, 1994, 66-67面 ; 영국은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보호법에 포함되어 있다. 영국 소비자보호법 제4조 제2항 참조

7) 우리 민법 제98조에서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하여 전기 등 무형의 것도 포함하고 있다.

8) 일본 민법 제85조에서 "본법에서 물이라 함은 유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松本恒雄, 앞의 논문(製造物責任の現狀と課題 4. 製造物), 39面 參照.

(라) 정보 등 지적산물

서적이나 소프트웨어(software)등에 의하여 공급된 정보에 기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製造物責任法을 적용할 것인가가 논란이 된다.

서적이 유체물로서는 하나의 제품이므로 製造物責任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서적의 내용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서적의 저자, 출판사 또는 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그대로 고무밴드를 사용하여 과학실험을 하던 중학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교과서출판사는 설 계상의 과실 또는 경고의 결여를 이유로 엄격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¹⁰⁾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소프트웨어의 개발자나 판매자에게 製造物責任을 부과하는 문제는 정보화시대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법률문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는 무체물이므로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해 프로그램이 기억되었거나 또는 조합된 디스켓이나 하드디스크, 또는 IC, 기타의 기계제품은 유체물이므로 製造物責任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결함은 프로그램이 인스톨(설치)되어 구조적 일체가 된 동산인 제조물의 결함으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는 製造物責任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소프트웨어를 용역행위로 보고 있는 듯 하

지만 대량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일종의 상품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대량으로 시판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작동한 결과 그 소프트웨어의 결함(예컨대 소프트웨어 자체의 문제,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다른 데이터나 하드웨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製造物責任을 인정하여도 좋을 것이다.¹¹⁾

(마) 血液製劑 및 생육전

미국에서는 뉴저지주, 바몬토주 및 콜롬비아 특별구를 제외한 48개주에서 혈액, 장기와 조직의 이식에 대한 엄격책임의 적용을 제정법에 따라 배제되고 있다.¹²⁾ 과실책임에 기하여 혈액과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원, 혈액은행 및 의사의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

혈액제제에는 크게 나누어 전혈제제, 혈액성분제제 및 혈장분획제제가 있으며, 전혈제제라 함은 혈액의 전체성분을 포함하는 것이며, 혈액성분제제는 혈액중에 적혈구나 혈장, 혈소판에 해당하는 성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며, 또한 혈장분획제제는 혈액중의 유효성분을 추출·가공한 것을 말한다.

혈액중의 유효성분을 추출·가공하여 치료에 사용되는 혈장분획제제가 製造物責任의 제조물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전혈제제나 혈액성분제제에 대해서는 제조물에 포함될 것인가 논란이 있다.

그러나 血液製劑 및 생육전은 血液 또는 바이러스 등에 加工을 한 製品이므로 輸血用 血液製劑(全血製劑, 血液成分製劑)를 포함하여 모두 製造物

10) Walter v. Bauer (4th Dept) 88 App Div 2d 787, 451 NYS 2d 533.

11) Brannigan & Dayhoff, "Liability for Personal Injuries Caused by Defective Medical Computer Programs," 7 Am. J.L. & Med. 123 (1981) 참조

12) 연기영, "생산물책임의 주체와 객체", 「비교사법」 제5권 2호(통권9호), 1998. 12., 354-355면

에 포함된다.¹³⁾

(바) 鑛物

채굴된 채로의 광물은 미가공 농수축산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힘에 의해 생산된 것이며, 과학기술이 진보하는 중에서 대량생산·대량판매되는 공업 제품에 대하여 발전되어온 법리인 제조물책임에 친숙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채굴 후 가공된 것(예컨대, 원유를 정제·분리한 석유제품, 광석에서 정련된 금속 등)은 제조·가공된 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결함(제2조 제2호)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2. “缺陷”이라 함은 당해 製造物에 다음 各目的 1에 해당하는 製造·設計 또는 表示상의 缺陷이나 기타 通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安全性이 缺如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製造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의 製造物에 대한 製造·加工상의 注意義務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製造物이 원래 의도한 設計와 다르게 製造·加工됨으로써 安全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設計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代替設計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代替設計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製造物이 安全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

한다.

다. “表示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說明·指示·警告 기타의 表示를 하였다면 당해 製造物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의 하자(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에는 포함되지만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간단한 품질의 하자는 본법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법에서는 결함의 정의에서 이것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타 通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安全性이 缺如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상기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결함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결함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결함은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이며 주로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하지만 사고의 방지나 재판 외에서의 분쟁처리에 있어서의 규범으로서도 기능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피해자의 입증부담이 과대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가능한 한 그 명확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製造상의 缺陷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製造業者의 製造物에

13) 通商産業省 産業政策局 消費經濟課 編集, 앞의 책, 71-72面

대한 製造·加工상의 注意義務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製造物이 원래 의도한 設計와 다르게 製造·加工됨으로써 安全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과정에 이물질이 혼입된 식품이나, 자동차에 부속품이 빠져있는 경우에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하게 된다.

(2) 設計상의 缺陷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代替設計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代替設計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製造物이 安全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었지만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예컨대 녹즙기에 어린이들의 손가락이 잘려 나간 경우처럼 설계자체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다.

(3) 표시상의 결함

表示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說明·指示·警告 기타의 表示를 하였다면 당해 製造物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이 제조물 자체의 결함이라고 한다면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물 자체가 아닌 결함이다.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나 지시 또는 제조물에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로 인하여 제조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표시상의 결함이 된다. 이를 지시·경고상의 결함이라고도 한다.

(4) 기타

본법에서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결함이 외에 「기타 通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安全性이 缺如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여 포괄적으로 결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결함의 유무에 대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와 기업 쌍방의 예측가능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고, 제품의 안전성 향상에 유용하도록 결함판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예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결함개념의 명확성의 요청과 쟁점의 확산(입증부담의 증가) 방지에 의한 피해자구제의 요청과의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공통성, 중요성, 양당사자에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염두로 고안하여, ①당해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 ②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 ③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기의 3가지 요소를 예시하고 있다.

라. 제조업자(제2조 제3호)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3. “製造業者”라 함은 다음 각 目的의 者를 말한다.

가. 製造物의 製造·加工 또는 輸入을 業으로 하는 자

나. 製造物의 姓名·商號·商標 기타 識別可能한 記號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各目的의 者로 표시한 者 또는 各目的의 者로 誤認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者

제조물책임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량생산·대량

소비라는 현상에 수반되는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신뢰책임, 위험책임, 보상책임 등이 전체로서 과실책임으로부터 결합책임으로의 전환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연혁을 감안하면 제조물책임을 묻게 될 책임주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수입업자(제3호 가목)

본법에서는 책임주체를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들고 있다. 이것은 제조물책임이 공업적인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형태가 일반적인 점을 배경으로 하여 발전된 법리라는 점에 기한 것이다. 「업으로」라 함은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기간 계속할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면 최초의 행위도 업으로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동종의 행위가 반복·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행해질 필요는 없고, 예컨대 시공품과 같이 당초부터 무상으로 배부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제조물이더라도 무상이지만 본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해석되지 않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동종의 행위가 반복·계속해서 행해지게 되면 「업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표시제조업자와 오인 표시제조업자(제3호 나목)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製造物の 姓名·商號·商標 기타 識別可能な 記號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者로 표시거나 가목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者로 誤認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者

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원△△△」「수입원△△△」 등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 등을 붙인 경우나, 특히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자기의 이름 등을 붙이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자는 스스로 제조 또는 수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표시를 하거나 명백하게 그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를 하는 경우를 통해서 제조업자로서의 신뢰를 주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은 신뢰책임의 관점에서 그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보증할 책임을 저야할 것이라는 견해에서 본법의 책임주체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예컨대 「판매원△△△」「판매자△△△」 등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 등을 표시한 경우이더라도 당해 표시자가 해당 제조물과 동종의 제조물 제조업자로서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당해 제조물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3) 판매업자의 취급(제3조 2항)

판매업자는 결함을 창출하여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시장에 공급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판매업자에게 제조업자와 똑같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EC지침처럼 보충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본법 제3조 2항에서 「製造物の 製造業者를 알 수 없는 경우 製造物を 營利目的으로 販賣·貸與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者는 製造物の 製造業者 또는 製造物を 자신에게 공급한 者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製造業者 또는 공급한 者를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

에 의한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급업자에게 보충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C지침에서는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업자로 본다. 다만 공급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해자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신원, 또는 당해 공급자에게 제조물을 공급한 자의 신원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판매업자 등의 보충적인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최종적인 배상의무자이어야 할 제조업자가 피해자에게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수단으로 둔 정책적인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마.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제3조)

第3條(製造物責任) ① 製造業者는 製造物の 缺陷으로 인하여 生命·身體 또는 財産에 損害(당해 製造物에 대해서만 발생한 損害를 제외한다)를 입은 者에게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 製造物の 製造業者를 알 수 없는 경우 製造物을 營利目的으로 販賣·貸與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者는 製造物の 製造業者 또는 製造物을 자신에게 공급한 者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製造業者 또는 공급한 者를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본 조는 제조자 등이 지는 제조물책임의 책임근

거규정이며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민법 750조)의 특칙으로서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1) 결함과 손해사이의 관계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추궁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당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점 즉 결함과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입증책임

본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제3조 1항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요건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의 재판실무에서는 제조물에 의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제조물의 종류, 결함의 태양, 제조 후 사고발생까지의 기간, 제조물의 사용상황, 증거의 편재상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개의 사안에 따라서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존재, 결함의 존재시기가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정에 있어서는 경험칙이나 사실상의 추정 등이 사안에 따라서 활용되며, 사안에 따른 공평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의 경감이 도모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의 법원 실무를 전제로 하면 추정규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제가 충분히 도모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추정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보호가 결여되는 것은 아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판

례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 393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견해를 채용하고 있으며 실무상도 이 판례이론을 받아들여 이 견해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법 제393조 규정의 기본견해는 개개의 사안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통상 발생한 손해)인가 특별손해(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인가를 검토해서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며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시에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본법은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제조물자체의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조물책임제도는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의 발현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는 역사적으로 확대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발전되어온 제조물책임의 연혁에 연유하는 것이다.

만약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당해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가 그 제품자체만에 그치는 경우에는 결함있는 제품자체의 손해와 결함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품질상의 하자가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와의 구별이 사실상 미묘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에서 품질상의 하자에 관한 부당한 클레임에 의한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이것을 배제해야 할 정책적인 요청을 고려하여 당해 결함제품 자체의 손해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구제에 맡기고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취해진 것이다. 다만 일단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대손해는 결함책임

에 의하고 결함제품자체의 손해는 계약책임에 의해 처리한다면 청구의 상대방이 입증해야하는 책임요건이 각각 다르게 되어 피해자의 부담이 과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제도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조물자체의 손해도 배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 정신적 손해

종래의 판례실무에 따라서 정신적손해도 당연히 손해배상이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현행의 불법행위법 하에서는 타당한 손해배상을 실현하기 위해 위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도 위자료는 종전의 판례·실무에 따라 인정된다고 생각된다.

(나) 사업용 손해

제조물책임을 도입하는 근거(신뢰책임, 위험책임, 보상책임)에 비추어 생각하면 제품사고의 피해자가 사업자(법인을 포함)인 경우 또는 피해의 대상이 사업용 재산인 경우에도 현행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의 대상이 사업용 재산인가 여부는 피해자 측의 사정이며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의 책임이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법 이론상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과실책임 대신에 결함책임이 도입된 경우이더라도 상당인과관계에 의해 확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사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도 배상의 대상으로 된다.

바. 제조업자의 면책사유(제4조)

第4條(免責事由) ①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立證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

한 損害賠償責任을 免하다.

1.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한 때의 科學·技術水準으로는 缺陷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製造物의 缺陷이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할 당시의 法令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原材料 또는 部品の 경우에는 당해 原材料 또는 部品을 사용한 製造物 製造業者의 設計 또는 製作에 관한 指示로 인하여 缺陷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가 製造物을 공급한 후에 당해 製造物에 缺陷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損害의 發生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 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免責을 주장할 수 없다.

본 조는 제3조에 기해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제조업자가 일정한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제3조에 규정하는 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이며,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면책사유는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둘째,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한 때의 科學·技術水準으로는 缺陷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셋째, 製造物의 缺陷이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할 당시의 法令이 정하는 기준을 준

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넷째, 原材料 또는 部品の 경우에는 당해 原材料 또는 部品을 사용한 製造物 製造業者의 設計 또는 製作에 관한 指示로 인하여 缺陷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이다.

(1)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판매를 위해 생산되었으나 아직 유통되지 않은 결합제조물에 의해 기업의 고용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품으로서 이미 유통되어 사용된 결합부품 또는 결합원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고용인은 결합부품 또는 결합원료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2) 개발위험의 항변(기술수준의 항변)

개발위험이라 함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수준에 의해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제조업자에게 개발위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면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이 저해되거나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에서 당해 결함이 개발위험에 상당하는 것을 제조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위험을 항변으로서 명시함으로써 고도의 과학·기술수준에 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제조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명백하게 되며 심리의 신속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발위험의 항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수준」의 해석이 문제로 되지만 본법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수준」이라고 하면 결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의 총체이며,

또한 특정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이라면 초보적인 지식에서 최고수준의 지식까지 전부가 포함되게 되며 스스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당해 결합의 유무의 판단에 필요하게 되는 입수가 가능한 최고수준의 지식에 비추어 결합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해서는 입수가 가능한 최고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판단기준으로 취해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3) 구속적인 법령기준준수의 항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라 함은 국가가 제조자에 대하여 법률이나 규칙 등으로 일정한(최고기준인) 제조방법을 강제하고 있고 제조자로서는 제조하는 이상 그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고 또한 국가가 정한 기준 자체가 정당한 안전에의 기대에 합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결합있는 제조물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을 의미한다.

제조자는 제조물이 기술기준이나 법률상의 안전기준에 합치하고 있더라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남유럽의 국가에서는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버터에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지만 이 첨가물은 발암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법률에 위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본 호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것이다. 이 면책사유는 설계상의 결합으로 실제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있고 기타 결합유형이나 기타 책임자에게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본 호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개념은 엄밀히 규정된 제조방법에 관한 행정법상의 구속적인

규칙을 의미하고 있다. 규정된 제조방법 때문에 결합이 발생하는 것은 제조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본 호에 의한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기준의 제정권자인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原材料 또는 部品 製造業者의 항변

부품·원재료제조업자의 항변은 제조물책임이 당해 제조물의 결합의 존재에 착안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인 이상 부품·원재료이더라도 결합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첫째, 그 제조물을 부품·원재료로 하는 다른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한 설계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해 결합이 발생하였다는 사례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둘째, 지시에 따른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지시를 한 제조업자와 같은 정도의 회피가능성 혹은 귀책성을 묻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본법에서는 관련부품·원재료제조업자의 이들을 조합한 다른 제조물의 제조업자와의 관계에 착안하여 당해 결합이 이들을 조합한 다른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한 설계에 관한 지시만에 기인하는 것을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정책적 관점에서 면책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5) 사후개선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의 면책사유 부인

이상과 같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가 있더라도 제조업자 또는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공급업자가 製造物을 공급한 후에 당해 製造物에 缺陷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합에 의한 損害의 發生을 방지하기 위한 적

절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 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개발위험의 항변, 구속적 법령기 준준수의 항변 및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에 의한 免責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물을 공급한 자는 사후에 제조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만약에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리콜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거나 설계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연대책임(제5조)

第5條(連帶責任) 동일한 損害에 대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복수의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책임을 지며 손해의 발생, 확대에 관하여 과실책임을 지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책임주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이들의 복수의 책임주체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각 책임주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원인과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다른 책임주체가 이행한 한도에서 배상 의무를 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함제품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복수의 책임주체가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 그 책임주체간에 있어서는 손해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부담부분이 결정되게 된다. 복수의 책임주체 중에서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의무를 먼저 이행한 자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책임주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아. 면책특약의 제한(제6조)

第6條(免責特約의 制限)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排除하거나 制限하는 特約은 無效로 한다. 다만 자신의 營業에 이용하기 위하여 製造物을 공급받은 者가 자신의 營業用 財産에 대하여 발생한 損害에 관하여 그와 같은 特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에 의한 자기의 제조물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된다. 이것은 주로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한 면책특약을 제한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신의 營業에 이용하기 위하여 製造物을 공급받은 者가 자신의 營業用 財産에 대하여 발생한 損害에 관하여 그와 같은 特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특약을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자기의 직접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미칠 뿐이며 제조물을 인도한 모든 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극히 한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만약에 사전에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뜻의 기재가 제품의 표시나 취급설명서 등에 있고, 그 효력이 거래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문제로 되는 경우에도 이 특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민법 제103조)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인적손해에 관한 면책특약에 대해서는 본법의 규정에서도 특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연히 무효이며,

공서양속의 위반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무효가 된다고도 해석된다.

자. 소멸시효 등(제7조)

第7條(消滅時效 등) ①이 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損害 및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를 안 날부터 3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② 이 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製造業者가 損害를 발생시킨 製造物을 공급한 날부터 10年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身體에 累積되어 사람의 健康을 해하는 物質에 의하여 발생한 損害 또는 일정한 潛伏期間이 경과한 후에 症床이 나타나는 損害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起算한다.

본 조는 제조물책임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다. 민법 제766조의 장기의 기간제한에 대해서는 판례상 제척기간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며 본법에 있어서도 같은 견해에 있으며 기산점 및 제척기간의 장기에 대해서 제조물책임의 성격등을 고려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즉 책임주체마다에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 중에는 제조물의 사용개시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 예상외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제조물의 통상 사용기간을 하나의 전제로 하는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손해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체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본법에서는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손해의 경우 제척기간의 특칙으로서 기산점을 「손해가 발생한 때」로 하는 규정을 두었다.

차. 민법의 적용(제8조)

第8條(民法의 適用) 製造物의 缺陷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본 법이 과실책임주의에 기한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제도에 더하여 새롭게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제도인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의 특칙이 되는 것이고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민법에 의한 보충적인 적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과실상계규정이 있다. 과실상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의 명문의 규정(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이 있다. 과실상계는 가해자측에 전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사정이 피해자측에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이며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고려되는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책임에 있어서 책임요건으로서의 「과실」과는 같은 것은 아니고 넓게 「피해자측의 부주의」로 해석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방해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민법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카. 시행일과 적용례(부칙 제1항, 제2항)

①(施行日) 이 법은 2002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법은 이 법 施行 후 製造業者가 최초로 供給한 製造物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부칙 제1항에서는 본법의 시행 일을 2000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주지·대응 준비기간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이라는 개념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점, 재판규범 뿐만 아니라 행위규범으로서도 기능하는 것이며 사회 일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리 관계자에게 새로운 제도의 내용을 주지 및 대응준비를 할 기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기간을 법률의 부칙에서 확정함과 동시에 그 시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적용례

일반적으로 민사법규에 있어서는 행위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법의 적용에 대하여 불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법 부칙 제2항에서도 제조물책임의 귀책근거는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한 다음 공급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제조업자 등이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기업의 제조물책임대책(PLP)

가. 제조물책임대책(PLP)의 개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책은 크게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제조물책임예방대책), PS(Product Safety ; 제품안전대책) 및 PLD(Product Liability Defense ; 제조물책임방어·소송대책)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PLP, PS, PLD의 3자의 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PLP를 PS와 PLD의 총칭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대응책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PLP를 PS(Product Safety ; 제품안전대책)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제품안전대책이 PLP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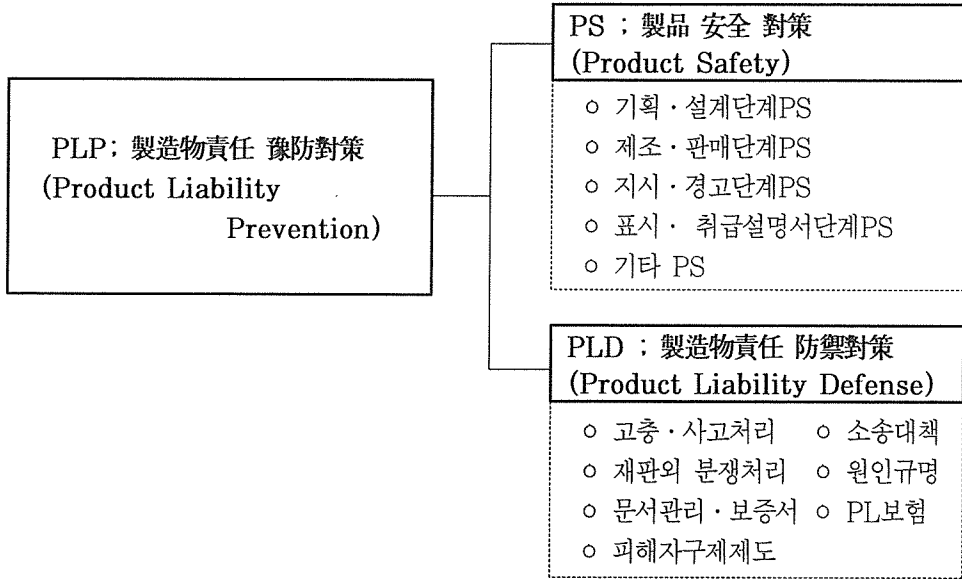
PLP활동의 명제로서 명심해야 할 것은 「소비자가 사용할 때에 어떻게 안전한 기능을 구비한 설계를 하는가」라는 점이다.

PL법이 어제서 제조업자에게 종래보다 엄격한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가? 그 이유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뜻이다. 제품자체의 구조를 재검토하든가 또는 안전장치를 정착시킴으로써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감소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없이 설계없다」라는 사고로 철저를 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거 오랫동안 안 익혀왔고 몸에 배어 버렸던 「좋은 제품을 값싸고 빨리」 공급한다는 기존의 사고를 즉각 설계단계에서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즉 PLP에서 말하는 「좋은 제품」이라 함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전혀 위해를 주지

〈 PLP와 PS 및 PLD의 관계 〉



않는 안전한 제품』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안전 설계가 PS의 기초인 것이다.

(1) 제품안전대책(PS)

PS라 함은 개발·제조·판매에서 사용·서비스·폐업에 걸쳐 모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PL의 원인이 되는 제품의 결함이나 제품 사고 또는 불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대책으로서 사용자(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활동이다. 인간존중에 입각한 안전설계에 철저를 기하고 오용이나 잠재적인 불량을 없애며 취급설명서를 보통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고, 경고라벨을 완비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2) 제조물책임방어대책(PLD)

PLD라 함은 PL문제로부터 기업을 방어하고 소

송이나 클레임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PL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사태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대책이며, 사후대책으로 볼 수 있지만 반증을 제시하거나 항변의 재료로서의 적절한 기록의 작성·보존이나 법정 소환시의 증인육성교육등은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은 늦고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대책이다. 또한 재판에서 화해하거나 만일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보험에 들어두는 것도 사전의 문제로서 검토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PL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공격은 최대의 방어이다. 적극적으로 선수를 치는 것이다. 방어라해도 사후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사전에 대책을 취해두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다.

나. 제조물책임예방대책

- 새로운 품질보증활동의 정립과 전사적인 대응체제의 정비 -

(1) 제품안전에 관한 경영방침의 확립과 경영자의 PL마인드 확산

우선 기업의 최고경영자에서 직접 제조·설계·판매에 관여하는 전체사원까지 인식과 발상이 바뀌어야 한다. 최근 고객만족경영이 모든 기업의 모토가 되다시피 되고 있는 경영환경속에서 어느 일본의 소비자문제전문가의 지적처럼 '제조물책임은 기업의 고객만족경영의 최저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안전성의 확보와 제품사고의 대응에 있어서 기업이념을 확립하고 사내에 확산되도록 철저를 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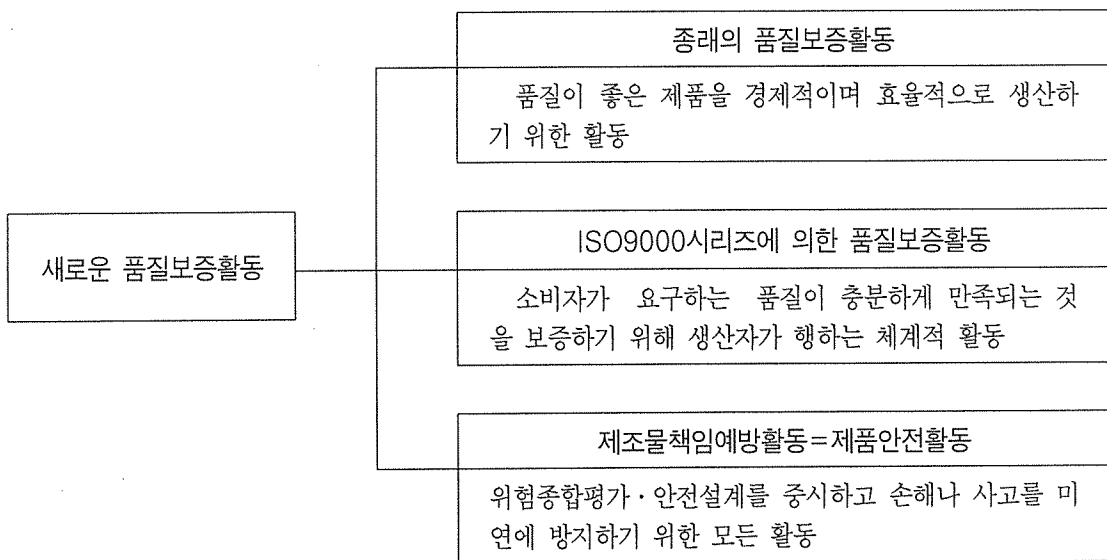
기업이념의 예를 들면 ①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책임의 하나이다. 안전성의 확보가 불충분한 제품은 상품이 아

니다. ②법규제나 기준은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명확히 하여야한다. ③제품의 회수나 대책에 쓰는 실패비용보다 제품의 개발단계에서 안전대책에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된다.

또한 종래의 품질보증활동인 KS나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ISO9000시리즈에 의한 품질보증활동도 많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ISO9000 시리즈의 인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PL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ISO는 품질관리체제의 구축이나 품질시스템의 문서화가 도모되기 때문에 PL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제조물책임예방대책은 "위험종합평가·안전설계를 중시하고 손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개념정립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보다 차원 높은 새로운 품질보증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새로운 품질보증활동의 개념 〉



(2) 제조물책임대책을 위한 전사적(全社的)인 대응체계의 정비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제품의 안전관리활동의 추진, 제품의 안전관리활동이나 제품사고의 실태조사, 제품안전정보·내외판례·PL정보 등의 사업부를 초월한 전달, 제품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대응등을 검토하기 위해 본사조직 및 각사업본부, 각공장마다의 제품안전추진조직을 설치한다.

예컨대 본사조직으로 품질보증추진부등의 조직 신설, 제품안전추진위원회, 제품안전추진간사회등의 연락위원회, 제품안전관련 기술위원회등의 워킹(working)위원회의 정기적인 개최, 각사업부나 공장에서는 제품안전위원회의 정기적인 개최등을 통해서 조직이 신설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성 있게 기능하여야 한다.

(3) 규칙·매뉴얼의 정비

품질·안전에 관한 이념,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 품질·안전보증활동, 제품사고대책등에 관한 규칙과 매뉴얼류를 정비한다.

(4)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재검토

- ① PL보험·리콜보험의 가입전략을 재검토한다.
- ② 리스크가 많은 제품의 제조·판매·수출을 재검토한다.

(5) PL법의 내용·대책의 교육

전체사원에게 PL법의 내용, 대책을 철저히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예컨대 ①해설서의 작성 ② 공장관리자, 설계기술자, 품질관리자, 부품납품업자등에 대한 제품안전교육의 실시 ③영업사원, 판매회사관리자, 유통서비스담당사원등에 대한 클레임처리연수의 실시등이며 그 내용은 법률지식, 사

례, 상품안전성, 제조물책임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또한 부서별·부문별로 교육도 실시한다.

첫째, 상품의 설계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상품의 결함은 설계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설계상의 결함은 생산된 상품 전체에 결함을 가져온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 내용은 안전기준, 관련법규, 제조물책임내용 등이다.

둘째, 제조물책임담당부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그 내용은 국내의 제조물책임법 및 관련법 동향, 국내의 제조물책임정보, 제조물책임에 대한 사전 그리고 사후대책 등이다.

셋째,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그 대상은 설계, 원료구매, 생산, 판매, 보관, 홍보, 광고 등 전사업부서에 소속하는 관리자이다.

넷째, 관련회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관련회사로는 판매회사를 들 수 있으며, 협력회사는 부품회사를 들 수 있는 바, 이러한 회사들은 제품의 생산과 유통에 관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계에서의 결함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 결함유형별 제품안전(PS)대책

제품안전대책은 설계, 제조, 품질검사, 마케팅, 광고, 소비자상담창구의 활용등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자동차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며, 안전이 가장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sales point)'가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시각을 안전에 두고 설계·디자인·광고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대명사인 벤츠의 경우 생명존중사상을

철저한 기업정신과 결부시켜 연간 매출액의 10% 이상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주요자동차회사들이 장착하고 있는 최첨단 제동장치인 ABS(Anti-lock Braking System)를 이미 78년 최초로 개발한 것도 이 회사였다.

(1) 결함의 유형별 제조물책임추궁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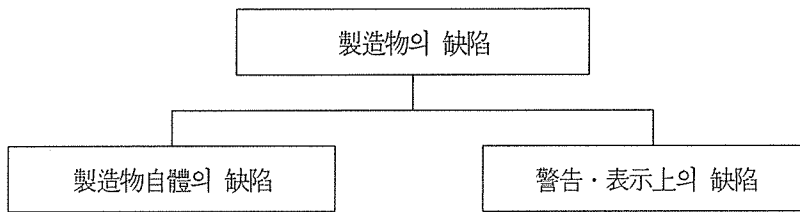
제조물책임법에서 새로운 책임요건으로 등장한 것은 『결함』이다. 결함이 없으면 아무리 소비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제품안전대책의 핵심은 결함방지대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함은 제품자체에서

나온 결함인 설계·제조상의 결함과 표시·경고상의 결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함의 유형별 제조물책임을 추궁당할 포인트는 (그림 2)에서 구분한 것처럼 여러 가지 포인트에 대하여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첫째 제품자체의 결함은 설계·제조상 발생하게 된다. 설계상 제조물안전설계·설계품질관리의 불충분, 안전시스템의 불비·부족, 중요보안부품의 내구성부족 및 최신기술수준에 불합격한 경우에 추구를 당하게 된다.

둘째 제조상 나타나는 결함은 고유기술의 부족·미숙에 의한 잠재적 불량, 제조의 품질관리의 불충분, 안전시스템의 고장 및 재질불량·가공불량·조립불량 등에 발생하게 된다.



(그림 2) 製造物の 缺陷에 대하여 製造物責任追窮의 포인트

- 設計上の 缺陷
 - 製造物安全設計·設計品質管理의 不充分
 - 安全시스템의 不備·不足
 - 重要保安部品の 耐久性不足
 - 最新技術水準에 不合格
- 製造上の 缺陷
 - 固有技術의 不足·未熟에 의한 潜在的 不良
 - 製造의 品質管理 不充分
 - 安全시스템의 故障
 - 才質不良·加工不良·組立不良
 - 信賴性檢證·試驗檢査의 不足·不良
- 取扱説明書·警告라벨의 不備
 - 取扱説明書の 説明不足·不充分
 - 警告라벨의 不備·不適切
- 販賣판플릿·宣傳廣告·販賣員의 説明不備
 - 宣傳廣告文書の 過大·不實表示
 - 販賣員의 口頭説明의 不備·明示의 保證違反

셋째 제품자체에서 나온 결함이 아니라 제품에 부속되는 각종 매뉴얼, 보증서 및 판매팝플렛, 그리고 제품에 부착된 각종 표시, 나아가 판매원의 설명까지도 제조물책임을 추궁당할 포인트가 된다. 취급설명서의 설명부족·불충분, 경고라벨의 불비·부적절, 선전광고문서의 과대·부실표시 및 판매원의 구두설명서의 부족·명시의 보증위반의 경우에도 추궁당하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2) 결함의 유형별 제품안전대책

(가) 개발·설계·제조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사전적인 대응방안의 핵심으로서 인간중중에 입각한 안전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사용할 때에 어떻게 안전한 기능을 구비한 설계를 하는가」라는 점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하며, 「안전없이 설계없다」라는 인식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과거 오랫동안 익혀왔고 몸에 배어 버렸던 「좋은 제품을 값싸고 빨리」 공급한다는 사고를 즉각 설계단계에서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계·제조상의 결함이 나오지 않도록 제품의 안전성 관리를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각국의 최신법규·규격·기준류와 기술정보를 입수하여 정비하고 적합하도록 한다. 사내의 제품안전기준(설계기준, 안전성 평가기준)을 재검토하여 철저를 기한다. 제품안전추진책임자, 안전성 체크전임자 등 제품 안전담당의 전문가를 돕고 동시에 관계부문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담하게 한다.

제조단계·사용단계를 포함한 제품의 각단계에 있어서 PS보증체계를 확립한다.

첫째, 연구·개발·설계·설계변경의 각 단계에서의 안전확보·확인을 제도화한다.

우선 안전성수준을 설정한다. 신제품 개발시에는 개발위험의 항변과 관련하여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본질적으로 안전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는가를 검토하고 본질적으로나 안전장치로도 위험성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통해서 위험요소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검토한다.

품질공학이나 신뢰성 수법(FTA, FMEA, FHA, ETA)을 활용하여 위험인자를 예견하여 추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위험인자는 모든 경우를 생각하여 배제하도록 한다.

안전성 관점에서의 설계를 평가하고 안전성을 시험하여 반드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자료는 소송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크한다. 무엇보다도 인간공학을 고려한 안전설계에 중점을 둔다.

둘째, 제조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나누어 매입, 제조과정, 검사, 출하의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품질관리·안전성 관리를 위한 독립부서를 설치한다. 안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고, ISO 9000 시리즈와 연동시켜서 제조단계에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끝으로 계기나 생산설비 등의 관리체제도 재검토하여 안전관리에 중심을 두고 기능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표시상의 결함이 되지 않도록 경고표시의 재검토

표시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로서 매우 중요성을 갖는다. 정보에는 사용정보와 선택정보로 나눌 수 있다. 사용설명서나 경고표시는 소비자의 사용정보로서 반드시 표시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광고선전이나 카달로그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돕는 선택정보이지만 소비자에게 제품과 선

전과의 차이를 느끼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PL법시대에는 광고선전까지 넓게 표시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어 표시결함으로 인한 PL책임을 질 수 있다.

제조물의 결함은 제품자체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문서결함” 즉 제품사용설명서의 문장이 어렵거나 그 안에 필요한 경고에 관한 글이 빠져 있거나 또는 경고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도 오해할 수 있는 문서라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결함은 변호사나 법관이 기술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미국보험협회가 1986년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제조물책임 보험금지급사례중에 「경고라벨의 미비」가 전체의 41%나 된다고 한다. 즉 제품본체를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적절한 사용지시나 오용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없다면 안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안전사용을 위한 제품에 대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비중을 두고 경고표시요령과 취급설명서등에 대한 올바른 작성요령에 대하여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의 위험은 설계·제조상의 배려만으로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는 없다. 그래서 표시라는 방법이 나와서 위험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경고라벨이나 취급설명서는 설계나 제조로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성에 관하여 소비자와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주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체들은 어떤 경고를 해야하는지 또 어느 정도로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가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다.

미국에서 적절한 경고표시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어도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 ① 제품에 따른 위험의 성질(위험이 폭발할 정도인가, 아니면 제품이 못쓰게 될 것이 가 등)
- ② 위험의 정도(위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것인가, 화재의 가능성이 있는가 등)
- ③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지켜야할 사항(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코드를 빼두는가 아니면 용도외의 목적에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든가 등)
- ④ 위험이 생겼을 경우 긴급조치(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응급조치사항을 지키도록 하여 피할 것 등)

따라서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사용법 등 필요한 안전정보를 취급설명서, 본체표시등에 의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제공해서 제품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표시상의 결함으로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 경고표시의 상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다) 부품·원재료의 결함의 배제

- ① 우수한 품질관리·안전관리를 행하는 납품업자, 설치업자를 선별한다.
- ② 부품·원재료 납품업자에 대한 발주에 있어서, 제품의 사용목적·스펙을 명시하고, 이들에 적합한 제품의 납품을 요구함과 동시에 납품품에 대해서 상당기간의 품질보증을 요구한다.
- ③ 부품 제조업자와 최종제품 제조업자와의

협력, 납품업자·설치업자 등에 대한 안전·품질지도를 한층 더 강화하여 부품·원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④ 최종제품 제조업자와 부품 제조업자 등과의 책임분담을 명확히 한다. 또 제품의 결함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의 분쟁해결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특약하는 등 제조물책임에 따른 구상권에 관한 계약조건을 재검토한다.

(라) 판매단계에서의 대책

(1) 수주시에 있어서 계약조건 등의 재검토

- ① 품질보증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손해배상액, 분쟁해결비용 등 납품처와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계약조건을 재검토한다.
- ② 납품처에 대해서 방법·설계상의 지시를 명확히 하고, 방법과 도면의 승인을 얻는다.

(2) 유통·판매단계에서의 결함의 발생 예방
제품의 보관, 운반, 설치에 있어서 결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반, 보관방법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유통업자, 판매업자, 운반업자 등의 협력을 얻는 체제를 만든다.

(3) 납품시의 안전확보

납품을 할 때에 사양·사용조건·올바른 사용방법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이상한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부록 : 제조물책임법(1999.12.16.
국회통과, 법률 제6,109호)**

第1條(目的) 이 법은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한 製造業者 등의 損害賠償責任을 규정함으로써 被害者의 보호를 도모하고

國民生活의 安全向上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1. “製造物”이라 함은 다른 動産이나 不動産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製造 또는 加工된 動産을 말한다.
- 2. “缺陷”이라 함은 당해 製造物에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製造·設計 또는 表示상의 缺陷이나 기타 通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安全性이 缺如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製造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의 製造物에 대한 製造·加工상의 注意義務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製造物이 원래 의도한 設計와 다르게 製造·加工됨으로써 安全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設計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代替設計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代替設計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製造物이 安全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表示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說明·指示·警告 기타의 表示를 하였더라면 당해 製造物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製造業者”라 함은 다음 각 목의 者를 말한다.

가. 製造物의 製造·加工 또는 輸入을 業으로 하는 자

나. 製造物의 姓名·商號·商標 기타 識別 가능한 記號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 목의 者로 표시한 者 또는 가 목의 者로 誤認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者

第3條(製造物責任) ① 製造業者는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生命·身體 또는 財産에 損害(당해 製造物에 대해서만 발생한 損害를 제외한다)를 입은 者에게 그 손해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 製造物의 製造業者를 알 수 없는 경우 製造物을 營利目的으로 販賣·貸與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者는 製造物의 製造業者 또는 製造物을 자신에게 공급한 者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製造業者 또는 공급한 者를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第4條(免責事由) ①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立證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免하다.

1.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한 때의 科學·技術水準으로는 缺陷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製造物의 缺陷이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할 당시의 法令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原材料 또는 部品の 경우에는 당해 原材料 또는 部品을 사용한 製造物 製造業者의 設計 또는 製作에 관한 指示로 인하여 缺陷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가 製造物을 공급한 후에 당해 製造物에 缺陷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損害의 發生을 방지하기 위한 적

절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免責을 주장할 수 없다.

第5條(連帶責任) 동일한 損害에 대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는 자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第6條(免責特約의 制限)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排除하거나 制限하는 特約은 無效로 한다. 다만 자신의 營業에 이용하기 위하여 製造物을 공급받은 者가 자신의 營業用 財産에 대하여 발생한 損害에 관하여 그와 같은 特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條(消滅時效 등) ①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損害 및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를 안 날부터 3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②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製造業者가 損害를 발생시킨 製造物을 공급한 날부터 10年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身體에 累積되어 사람의 健康을 해하는 物質에 의하여 발생한 損害 또는 일정한 潛伏期間이 경과한 후에 病床이 나타나는 損害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起算한다.

第8條(民法의 適用) 製造物의 缺陷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에 관하여 이 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製造業者가 최초로 供給한 製造物부터 적용한다.

< 문의 안내 >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사내 특강이 필요하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성 명 : 최 병 록 교수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31번지 서원대학교 법학과

전 화 : (043) 261-8605(연구실) / FAX : (043) 261-8248

휴대폰 : 011-468-8605/E-mail : brchoi@dragon.seowon.ac.kr

홈페이지 : <http://www.drago.seowon.ac.kr>

